

2019년도

2019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4. 19.(금요일), 11: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정해임, 정형호, 허순선, 심승구,
양종승, 유영대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공개 |
|---|-----------------------------------|----|

【검토사항】

- | | | |
|---|------------------------------------|----|
| 1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 공개 |
|---|------------------------------------|----|

심 의 사 항

1.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가. 제안사항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2018.10.19.)에서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고(‘18.10.30.~)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포함(‘16.1.27.)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용역 실시(‘16.4.25.~9.21.)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17.4.21 / 2017 제4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있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에 따라 보유단체 공모를 실시토록 함
- 보유단체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접수(‘17.7.10.~8.10.)
- 보유단체 인정조사 인력풀 추천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17.8.25 / 2017 제6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조사단 사전회의 실시(‘18.7.11.)
- 2018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 검토(‘18.10.19.)
 -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2) 예고사항(관보 제19367호/2018.10.30./문화재청 공고 제2018-326호)

○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내용

종목 지정 명칭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소
불복장작법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2014.4.10.	의례, 물목마련 및 후령통 조성·납입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 예고사유

-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은 불상·불화 등을 조성하여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여러 물목을 봉안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을 말하며,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불복장작법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3) 예고결과 : 의견접수 없음

4) 예고 이후 보유단체 법인화 추진 경과

- 보유단체 법인 설립 추진계획 제출 요청 : '18.10.30.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등 반영한 정관안 마련 요청
- 보유단체 법인 정관안 제출 : '18.12.27.
- 보유단체 법인 정관안에 대한 회신 및 재제출 촉구 요청 : '19.1.28, '19.3.14..
- 보유단체 법인 정관안 재제출 : '19.4.9.

라. 검토의견

- 신규종목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 인정조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 전승단체 주요 전승자 5인이 참여한 개별 시연 및 전체 실연에 대한 평가에서 조사자 모두 전승단체의 전승기량과 전승의지를 높게 평가하였음.
 - 종단을 초월하여 설립된 범불교적 단체로서의 의미를 높게 평가함. 동시에, 전승자별 다양성 인정과 함께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향후 법인화 추진 및 단체 운영에 있어 특정 종단에 편향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승단체는 이를 수용함.

- 이에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 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였으며(‘18.10.30.), 인정 예고기간의 이의제기는 없었음.
- 보존회에 대한 법인화 추진계획 및 정관안 제출 요청 등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정관준칙 등을 반영한 보유단체 법인 정관안을 보존회가 최종 제출하였음 (‘19.4.9)
-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 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심의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함
 -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단,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끝.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 2019-06-002

1.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 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 지정일 : 1980.11.17.
- 전승자현황
 - 보유단체 : 밀양백중놀이보존회(’86.11.1. 인정)
 - 보유자(2명) : 박동영(’52년생, 남, 북장고, ’02.2.5. 인정)
하용부(’55년생, 남, 양반·범부춤, ’02.2.5.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이용만(’40년생, 남, 영각·좌상객, ’07.3.12. 인정)
최선희(’61년생, 여, 춤·악사, ’15.11.17. 인정)

2) 추진 경과

-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성폭행 논란 언론 보도(’18.2.19)
- 문화재청, 하용부 보유자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알림(’18.2.21.)
 - 사유 :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의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 정상적인 전승 활동 이행이 어려움
- 하용부 보유자, 성폭행 사실 인정 언론 인터뷰(’18.2.26.)

- 밀양백중놀이보존회, 하용부 보유자 회원 제명 의결('18.3.1.) 및 문화재청 승인 요청('18.4.30.)
 - 제명 사유 : 통념상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를 하여 보존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명 근거 : 밀양백중놀이보존회 정관 제9조2항
- 문화재청, 하용부 보유자 회원 제명 승인('18.5.17.)
- 문화재청,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전수교육 실적 제출 요청('19.3.6.)
- 밀양백중놀이보존회, 보유자 전수교육실적 확인 제출('19.3.8.)
 - 협업포털시스템 등록 전수교육실적으로 대체 제출
 - 전수교육 참여 실적 : '18.2월~'19.3월 전수교육 불참
- 문화재청,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관련 청문 알림('19.4.1.) 및 청문 실시('19.4.16.)
 - 하용부 보유자, 불출석으로 청문 종결
 - 불출석 사유 : 출석 거부(유선 확인/'19.4.15.)

3)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검토의견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 및 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하여 전수교육지원금 중단 및 보유단체 제명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전수교육 활동을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 간의 경과와 관련 규정,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내용 :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여부

바. 의결사항

○ 가결함

- 하용부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함.
 -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 및 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하여 전수교육지원금 중단 및 보유단체의 제명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은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 인정예고 후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함.

끝.